

대법원 2017도10469

국회의원 박00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이기택)은 2018. 2. 8. 피고인 박□□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(피고인들의 상고는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기각), 피고인 박□□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'김○○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, 문자메시지 전송업체에게 선급한 전송비용 중 실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선거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'고 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,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도10469 판결)

1. 사안의 내용

■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박□□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

- 정○○, 김○○으로부터 선거운동 활동경비 및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수령하여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수수하고(공직선거법위반),
- 홍보메시지 전송업체에게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3,610만 원(일부는 김□□, 고○○와 함께)을 지급하여, ①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고(공직선거법위반), ②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고(정치자금법위반), ③ 정치자금을 기부하고(정치자금법위반),
- 홍보업체 대표에게 견적서 등에 금액을 축소 기재하도록 하여, 선거비용 지출 증빙서류 허위기재를 교사하였음(정치자금법위반)

■ 원심의 판단

- 김OO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수령하였다는 부분, 홍보메시지 전송업체에게 발송비용으로 선납한 금액 중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부분 ➡ 이유 무죄
- 나머지 ➡ 유죄(피고인 박□□ 벌금 250만 원, 추징 565만 원)

2. 대법원의 판단

가. 사건의 쟁점 : 검사의 상고 부분

- 피고인 박□□가 김OO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활동경비 및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받았는지
- 문자메시지 전송업체에 지급한 선납금 중 실제 전송비용으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부분(반환 예정)도 선거비용 지출행위에 해당하는지

나. 판결 결과

- 상고기각 (유죄 및 이유무죄 확정)

다. 판단 근거

-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OO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
- 선거비용은 실제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, 문자메시지 전송업체에게 선납하였으나 실제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아 반환된 것은 선거비용으로 '지출'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

3. 판결의 의의

- 원심의 사실인정 및 평가를 수긍한 사례임